

2016년도 황룡면 종합감사 결과

1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9. 27.(화) ~ 9. 30.(금), 4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4명
- 감사대상 : 2013. 10. 19. ~ 2016. 9. 26.

2 |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7	10	17	13/1,671.3	6/1,194.3	6/477	-	
원 처 분	12	6	6	12/1,425.3	6/1,194.3	6/231	-	훈계 2 주의 2
현지처분	15	4	11	1/246	-	1/246	-	

※ 회수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부적정,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 소홀

※ 추징 :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누락

3 | 지적사항

원 처 분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시정)

- 2014. 6.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 등 5명에게 ●◎◇◆ 의류 5벌 1,500천원 집행

- 2013.12. ●◎★ ◇◆● 징수를 위한 유류구입 1,007천원 집행 후 감사일 현재까지 ●◎★◇◎◆에 유류 보관
- 2014. 3. 부서운영비에서 ◇◆□●◎ 직원 급식비 161천원 집행
- 2014. 2. 정원가산금에서 ●◎★ ◇◆ ●◎ □◆◆ 140천원 집행
- 2014.12. 정원가산금에서 ◎★◇◎ 직원 노고격려 ◎◆◆ 180천원 집행
- 2014.12. 정원가산금에서 ◎★◇◎ 직원 노고격려 ◎◆◆ 48천원 집행
- 2014. 5. 2014년 ◇◎ 조성을 위한 ◎★◆◆□ 130천원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후 59일만에 입금
- 2014. 9. 풀베기 작업 인부임을 계약단가보다 2명에게 각1만원씩 초과 집행
- 2015.12. 면사무소 청사와 창고 연계 비가림시설 사업비를 공공운영비에서 2,280천원 집행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시정)

- 2014. 3. 시책사업과 무관하게 ●◎◆◆ 식대 등 2건 276천원 집행
- 2014. 9. 면 청사 ●◎◆방문자 ◇◆□(●◎★◆ 10개) 지급대상자 미기재
- 2014.12. 겨울철 관내 독거노인 18명에게 내복 구입비 360천원 집행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시정)

- ◎★◆◆에 휴면계좌 1계좌 미해지 상태임.
- 2013. 12. ●◎◆◆□ 및 ●◎★◆◆□로부터 1,600천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

4. 경로당 개보수 등 계약업무 부적정(시정)

- ●◎,◆◆◎★ 경로당 개보수사업 준공기한 도과 : 지체상금 부과대상
- 지체일수 : 8일, - 지체상금 : 52,000원

5.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주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사후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비치 등 관리책임자를 미지정
⇒ 2014~2015년까지 3천만원 미만 8개사업 192명

6.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 소홀(시정)

- 신청한 농지전용신고 건에 대하여 전용된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쌀보전 직접직불금을 지급 : 1건, 67,270원

7.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 지연(주의)

- 2015~2016년까지 민원처리기간이 4일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민원을 1~3일 지연 처리 : 7건

8.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주의)

-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관리기관에서는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농지원부 일제정리 계획을 미수립하고, 정비실적이 없음.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주의)

- 대상자 배부실태 확인 : 전입자, 연령도래자, 장기입원자
- 지급 대상자 : 1,194명 중 33명 573매 부당 지급

10.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부 소홀(주의)

- 수불 내역에 따른 수수료 수납 실태 확인 : 수수료 지연 수납처리 144건
- 2014년 쓰레기봉투 12, 음식물쓰레기짚 7, 대형폐기물스티커 42건
- 2015년 쓰레기봉투 6, 음식물쓰레기짚 3, 대형폐기물스티커 29건
- 2016년 쓰레기봉투 6, 음식물쓰레기짚 5, 대형폐기물스티커 34건

1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업무추진 소홀(주의)

- 장애인등록자중 사망자에 대한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처리 확인
- 2013. 10 ~ 2016. 6월 사망자 18명 : 18건 미회수함.

12.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소홀 및 취득세 부과 누락(시정)

-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장 미비치로 번호판 관리 소홀
- 사용신고 된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누락 : 5건, 179천원

현 지 처 분

1.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주의)

- 201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업무관리자(3명)와 업무와 무관한 직원(2명)에게 피복비 지급 : 5벌, 1,500천원

2. 가설건축물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 지방세(면허세) 미부과 : 3건

3. 황룡면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건축물 외에 불법증축행위 : 282.35㎡
- 1층(식당·주방 12㎡, 창고 90㎡, 비가림시설 19.35㎡, 주차장 161㎡)

4.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소홀(주의)

- 2013~2014년 개발행위 준공기한 도과 : 미준공(12건)

5.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급 소홀(주의)

- 2014년 ●◎◇◆□ ★◇ 구입 등 : 9건/2,260천원 과다징수

6.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소홀(주의)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작업일보 미작성 : 5건

7. 수의계약 업무 소홀(주의)

- 지출결의서 승낙사항에 착공 및 준공일자 누락으로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준공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준공금 지급에 지체상금 대상여부 확인불가 : 7건

8.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주의)

- 2013~2015년까지 직장가입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확인서 일부 누락 및 읍면 확인사항에 대한 항목별 미확인 후 지급 : 41명, 41,917천원

9. 산불예방 진화장비 사후관리 소홀(주의)

- 산불장비 보관현황, 장비목록, 수불부 등 정리되어 있지 않고 보관창고 청소 및 장비 구분적재 등 환경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등 산불발생시 즉각 대처능력이 미흡하게 추진

10.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주의)

- 2014년 방문상담 468회 미실시, 지연상담 10회
- 2015년 방문상담 198회 미실시, 지연상담 10회
- 2016년 방문상담 4회 미실시, 지연상담 10회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 수불업무 소홀(주의)

- 장애인자동차 표지 수불대장 기록 없이 표지 발급
- 표지 수령 : 2012년 260매, 2015년 50매
- 현 보유량 : 203건

12.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 민원처리 지연건수 20건, 결재없이 처리 후 처리결과 미통지 15건

13. 인종기용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주의)

- 2013~2016년까지 지연 납입 : 39건, 2,004천원

14.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2013. 10. ~ 2016. 9월까지 인감 이송기간 3일 이상 경과 : 229건

※ 이송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공부와 함께 신증명청에 이송

15.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지 소홀(주의)

- 2014~2016년 지역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사실조사 미실시 후 명단 확정
- 민방위 대원명부를 당해연도 1.10일까지 리 민방위대장에게 미송부

2016년도 황룡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7건	10	17	13/1,671.3	6/1,194.3	7/477	
1	원 처 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1,027	2/1,027		훈계1 주의1
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2/100	2/100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		1/0.3	1/0.3		
4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		1/52		1/52	
5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		○				
6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 소홀	○		1/67	1/67		
7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 지연		○				훈계1
8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				주의1
10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부 소홀		○				
1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업무추진 소홀		○				
12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소홀 및 취득세 부과 누락	○		5/179		5/179	
1	현 지 처 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 부적정		○				
2		가설건축물 지방세 부과 소홀	○		1/246		1/246	
3		황룡면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4		개발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점검	○					
5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급 소홀		○				
6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소홀		○				
7		수의계약 업무 소홀		○				
8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		○				
9		산불예방 진화장비 사후관리 소홀	○					
10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		○				
11		장애인 자동차표지 수불업무 소홀		○				
12		민원 처리 부적정		○				
13		인증기용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				
14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5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사실확인 및 대원명부 통지 소홀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시 정	회 수	1,027,400	

제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재정법 제3조(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71조(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장성군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2013. 12. 13.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유류 구입비 등 8건 4,624천원을 【표 1】 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1】 세출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금액	부당사항
계	8건	4,624,400	
2013.12.13	●◎★ ◇◆● 징수를 위한 유류구입	1,007,400	감사일 현재 유류 미사용
2014. 3.13	◇◆◎★● 직원 급식비 지급	161,000	부서운영비 집행 부적정
2014. 2.11	◆◎★ 직원 ◆● 구입비	140,000	정원가산금 집행 부적정
2014.12. 3	◎★◇◆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구입	180,000	정원가산금 집행 등 부적정
2014.12.26	◎★◇◆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구입	48,000	정원가산금 집행 등 부적정
2014. 5.15	2014년 ◎★ 조성을 위한 ◇◆ 구입	130,000	채주에게 지급않고 59일간 유용
2014. 9.29	2014년 풀베기작업 인부임(●◎◇ 생태공원)	670,000	계약단가 보다 2만원 초과지급
2015.12.30	면사무소 청사와 창고 연계 비가림사업비	2,288,000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처분지시]

① 감사일 현재까지 미사용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유류구입비 1,007,400원과 2014년 풀베기작업 인부임 초과 지급한 20,00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시 정	회 수	100,000	

제목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고, 격려금은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와,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소속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부의금은 읍면장의 경우 소속직원을 제외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2014년도에 제수대 및 격려금 2건 100천원을 [별표]와 같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별표]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6건	835,000	
'14. 3. 13	◆◎★● 식대 지급	216,000	시책사업 추진과 무관
'14. 3. 18	◎★◇◆ 춘향제 제수대	50,000	현금집행 제한
'14. 7. 8	제11회 ★●◆ 장성 ◎★◇◆●대회 격려	50,000	현금집행 제한
'14. 9. 3	면 청사 ◎★◇ ▲◆●(◇◆트 10개) 구입	99,000	지급대상자 미기재
'14. 9. 3	업무추진 직원 격려 (식대)	60,000	시책사업 추진과 무관
'14. 12. 12	겨울철 관내 독거노인(18명) ◇◆ 구입	360,000	집행기준에 부적정

[처분지시]

①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2건, 100,0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시 정	회 수	310	

제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 의거 세입세출 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이다.

- 같은 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제5항에 의하면 “세입세 출외 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 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치 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08.1.24. ●◎◇◆과 최종 거래한 휴면계좌 1계좌(잔액 310원)를 관리하고 있고, 【표 2】 와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다르게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

【표 1】 세입세출외현금계좌 개설 현황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원)	비 고
배정,재배정	◎★◇◎	000000-00-000000	0	-
법인카드결제	◇◆◇◎	000-00-000000	369,350	-
민원수수료	◎★◇◎	000-0000-0000-00	0	-
세입세출외현금	“	000000-00-000000	115,400	-
공과금자동이체	“	000000-00-000000	82,000	-
휴면(2008.1.24.)	“	000000-00-000000	310	반납 및 해지
황룡면체육회	“	000-0000-0000-00	150,071,260	-

【표 2】 기부금품 모집현황

입금일자	입금 계좌번호		기탁자	기탁액(원)	비 고
2013.12.23	●◎◇◆	000000-00-000000	◎★◇◎◆	1,000,000	2014.1.20. 경로당 31개소 위문품비 집행
2013.12.31	“	000000-00-000000	●◎★◇◆	600,000	

[처분지시]

휴면계좌에 대해 해지처리 및 잔액 310원 세입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시 정	추 징	52,000	

제목 :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황룡면에서는 2013. 5. 31. (주)●◎◇◆ 대표와 『●◎,◇◆◎★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25조 (지체상금) 제1항의 규정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황룡면에서는 『●◎,◇◆◎★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당초 공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준공처리하였음에도 【표 1】과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및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황룡면에서는 【표 2】과 같이 준공계 접수날짜를 허위로 지정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지체상금 부과액

사업명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징수금액	비고
●◎,◇◆◎★ 경로당 개보수사업	6,500,000원	0.1%	8일	52,000원	

※ 계산식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표 2】 준공계 접수날짜 변경 현황

사업명	계약자	공사기간	준공계 접수일		비 고
			정(正)	부(不)	
●◎,◇◆◎★ 경로당 개보수사업	(주)●◎◇◆	2013.5.1.~ 2013.7.14.	2013.7.22.	2013.7.12.	

[처분지시]

지체상금 52,00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주 의			

제목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황룡면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2014~2015년도에 황룡면 ◇◆◎ 000-0 ◎◆◆의 000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8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후관리 점검 업무를 일부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현황(2014~2015)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환풍기	30기	10,470	5,206	5,264	
원예특화	8동 3925㎡	22,940	11,470	11,470	
특용작물	24,406㎡	59,940	29,970	29,970	
원예관정	25공	133,000	66,500	66,500	
다목적소형하우스	1,023㎡	22,500	11,250	11,250	
FTA현대화사업	92,277㎡	210,206	105,105	102,903	
저온저장고	20동	141,500	64,309	77,191	
농기계 지원	관리기 등 22대	44,620	22,690	22,690	

[처분지시]

앞으로는 3천만원 미만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시 정	회 수	67,270	

제목 :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황룡면에서는 쌀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쌀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었다.
- 그런데도 황룡면서는 【표 1】과 같이 농지전용신고 건에 대하여 전용된 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쌀보전직접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농지전용 필지 직불제 지급 부당

신청인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m ²)	전용면적(m ²)	전용목적	직불금수령		환수액	비고
								연도	금액		
●◎★	황룡면	◇◆◎	000-00	답	2,597	625	◎◆□	2015	279,540	67,270	

[처분지시]

부당 지급한 직불금 67,27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주 의			

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 지연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황룡면에서는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4일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표 1】 과 최소 1~3일 초과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처리 지연내역

연번	신청인	신청인주소(도로명)	신청 소재지명	접수일자	처리일자	경과수
1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00-00	◆◆◎ 000-0	2016-03-04	2016-03-11	1
2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000	◆◆◎ 000-0	2016-03-04	2016-03-11	1
3	●◆■	대전광역시 ◆■ ◆◎★ 000, 000동 000호	★◆◆ 000 외0	2016-02-26	2016-03-07	1
4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00-00	◆◎★ 000	2015-12-30	2016-01-07	2
5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000	◎★◆ 000-0 외 2	2015-10-26	2015-11-04	3
6	●◆■	경기도 ◆◎★ ◎★◆ ●◆■★ 000번길 0-0, 000호	◆◎★ 000-0 외 3	2015-10-21	2015-10-28	1
7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00-0	◎★◆ 000-0	2015-10-06	2015-10-14	1

[처분지시]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주 의			

제목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위법·부당 내역]

- 황룡면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농지원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1)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기적으로 매년 1회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정비하여야 하며 농지소유권 변동 등의 사항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도에 농지원부 일제정리 계획을 미수립하고 정비 실적 없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농지경작구분별 현황(2016. 9월현재) - 농업행정시스템

(단위 : ha)

행정리	합계		자경		임대		휴경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4개리	9,839	13,995	3,521	5,078	2,063	3,583	742	517	3,513	4,817

[처분지시]

앞으로는 농지원부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3항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함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주 의			

제목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황룡면에서는 의료복지혜택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기준으로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전입자가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2016년까지 이용권 지급 대상중 사망자 10명에게 사망일 다음달에 90매를 지급하였고, 전출자 3명에 대하여는 전출일 다음달에 27매를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20명에게 456매를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부당 지급 현황(단위 : 명, 매)

구 분	연 도 별	인 원	수 량	비 고
사망자	소계	10	90	
	2015	8	72	
	2016	2	18	
전출자	소계	3	27	
	2015	3	27	
장 기 입원자	소계	20	456	
	2015	11	261	
	2016	9	195	

[처분지시]

앞으로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른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준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주 의			

제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부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카 구입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읍·면사무소에서 매수해야 하며, 읍·면장은 주문에 의해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불입토록 조치하고 영수증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황룡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4~2016년 9월까지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짚, 대형폐기물 스티카 반출시 수수료 납입 후 교부하여야 하나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1】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연납현황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계		526	144	
쓰레기봉투	2014	26	12	1일~7일
	2015	28	6	1일~2일
	2016	14	6	1일~5일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음식물쓰레기철	2014	13	7	1일~13일
	2015	10	3	1일~3일
	2016	9	5	1일~11일
대형폐기물스티카	2014	119	42	1일~15일
	2015	165	29	1일~5일
	2016	142	34	1일

[처분지시]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배부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확인 후 배부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주 의			

제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업무추진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자 중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회수하여 폐기해야 하며,
-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등록 장애인 중 사망자에 대하여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장애등록을 취소하고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회수 후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 사망자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현황

연도별	장애인 사망자 수	회수 및 폐기	미 회수	비고
계	18	-	18	
2013	2	-	2	
2014	7	-	7	
2015	3	-	3	
2016	6	-	6	

[처분지시]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황룡면	2016	시 정	추 징	178,940	훈 계 (병합)

제목 :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소홀 및 취득세 부과 누락

1.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소홀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읍면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시 대장을 비치하여 순번에 따라 번호판을 지정하여야 하나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부락

- 『지방세법』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황룡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4년도 2건, 2015년도 1건, 2016년도 2건에 대해 감사일 현재 178,940원을 부과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 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시에는 반드시 지방세 담당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토록 안내하여야 하나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이륜자동차 취득세 누락 현황

(단위 : 건,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178,940	2	91,750	1	25,850	2	61,340	

[처분지시]

취득세 부과 누락분 5건, 178,94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륜자동차 업무 추진시 신고필증 교부 후 지방세 담당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토록 반드시 안내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